

의안번호	2200489
의 퇴 인	박상혁 의원
회 답 일	2024. 7. 1.
추 계 번호	24B090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 드론기술 기준 마련,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 비행규칙 마련,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증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억 8,800만원(연평균 16억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드론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	100	-	-	-	100	20
드론기술기준 (안 제8조)	65	-	65	-	65	195	39
무선설비 등 (안 제9조)	650	0	80	80	80	730	146
드론 비행규칙 (안 제17조)	100	-	100	-	100	300	60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증명 (안 제24조)	115	1,662	1,662	1,662	1,662	6,763	1,353
계	930	1,762	1,907	1,742	1,907	8,088	1,618

주: 1. 향후 기본계획, 드론기술기준, 드론 비행규칙 관련 연구용역비 단가, 무선설비 시스템 구축 단가, 조종교육 증명 시험 관련 수당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드론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1. 드론 관리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드론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드론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관련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드론 조종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	안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드론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드론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드론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드론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 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3	안 제8조(드론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드론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드론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함 1. 드론의 안전성 기준 2. 드론의 통신기술 기준 3. 드론의 무선설비 등을 위한 기준 4. 그 밖에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3조(사실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드론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드론을 드론사용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의무규정
7	안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 관련 인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관련 인증은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 함	재량규정
8	안 제17조(드론 비행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1항)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가시권(VLOS) 비행에 관한 규칙 3. 비가시권(BVLOS) 비행에 관한 규칙 4. 군집비행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번호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0	안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무인비행장치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해당 무인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무인비행장치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함(제1항)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연습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외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연습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시행중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13조(사실조사)	—	
3	안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 의무)	—	
4	안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	
5	안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	
6	안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 신고 등)	—	
7	안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	—	
8	안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	
9	안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10	안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1	안 제8조(드론기술기준)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2	안 제9조(무선설비 등)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3	안 제17조(드론 비행규칙)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4	안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 교육증명)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법 및 현행사업
안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현행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의 조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등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안 제13조(사실조사)	현재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에 따라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에서 사실조사 업무 실시 중
안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현재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따라 소형드론을 보유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개별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
안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현재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 시행 중
안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현재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수행 중(‘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 수리 및 신고번호, 신고증명서 발급 중)
안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안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현재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라 각 공역 담당기관(지방항공청 등)에서 비행승인 업무를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검사 업무도 수행 중
안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현재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따라 자격증명 및 교육을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센터 및 드론교육센터 운영 중
안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현재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업무(공단 자체예산) 및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수행 중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현재 실시 중인 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8조의 드론 기술 기준, 안 제9조의 무선설비 등, 안 제17조의 드론 비행규칙, 안 제24조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드론관리기본계획) 다른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드론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정안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현행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종료 시점에 맞추어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
 - (드론기술 기준) 드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기술 기준은 2년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
 - (무선설비 등)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과 시스템 구축을 추계기간 첫 해인 2026년에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가정
 - (드론 비행규칙) 드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비행규칙은 2년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
 -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자격 신설 준비를 위한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하며, 2027년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다른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드론관리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¹⁾에 따라 드론관리기본계획은 2027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 연구 용역(100백만원) 단가 적용

[표 3]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드론관리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100	-	-	-	100	20

주: 향후 정책연구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드론기술 기준(안 제8조)

- 드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기술 기준은 2년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
- 항공 기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드론기술 기준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9,500만원(연평균 3,900만원)으로 추계

[표 4] 항공·초경량 기술기준 및 인증 관련 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구용역	예산액
2017	성능에 기반한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정비방안 마련 연구	50
2019	신기술항공기(전기동력 등) 인증제도 개선 연구	40
2021	드론분야 국산인증 기준 개선방안 연구	70
	운항기술기준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90
2023	항행안전시설 기술기준 체계 국제 표준화 연구	75
평균		65

자료: 국토교통부

1) 안 부칙 제14조(드론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른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표 5] 드론기술 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드론기술기준 (안 제8조)	65	-	65	-	65	195	39

주: 향후 정책연구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무선설비 등(안 제9조)

-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과 시스템 구축을 추계기간 첫 해인 2026년에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가정
-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7억 3,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 4,600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115백만원
 - SW개발 및 HW구입 등 시스템 구축비 535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구축비의 15%를 적용²⁾하고, 2028년부터 발생³⁾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ISP 및 시스템 구축비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정보전략계획수립(ISP)	주요 업무현황 분석 및 구축계획 수립	115
SW 개발·구현	운영·관리 SW 개발	403
	정보(기체신호 등) 연계	
	상용 SW 구축	
HW 인프라 구축	서버(WEB·WAS·DB) 구축	80
	보안장비(방화벽 등) 구축	
정보화사업 감리	사업관리, 성과품 및 산출물 감리	52
합 계		650

자료: 국토교통부

2)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효율: 10 ~ 15%(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3) HW 유지관리비, 상용 및 개발 SW 유지관리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7] 무선설비 장착·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무선설비 등 (안 제9조)	650	0	80	80	80	730	146

주: 실제 시스템 구축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드론 비행규칙(안 제17조)

- 드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비행규칙은 2년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드론 비행규칙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으로 추계
 - － 드론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연구(2021): 100백만원

[표 8] 드론 비행규칙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드론 비행규칙 (안 제17조)	100	—	100	—	100	300	60

주: 향후 정책연구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증명(안 제24조)

-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자격 신설 준비를 위한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하며, 2027년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증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7억 6,300만원(연평균 13억 5,300만원)으로 추계

- 표준교재 제작: 100백만원
 - 유사사례 적용: 경량·초경량 항공기 조종사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연구
- 문제출제: 15백만원⁴⁾
 - 문제출제수당 : 1,000문제 × 8,000원 = 800만원
 - 문제선정 교정 및 검토수당 : 4명 × 4일 × 180,000원 = 288만원
 - 격리수당 = 432만원(외부 : 4명 × 12일 × 60,000원 = 288만원, 내부 : 2명 × 12일 × 60,000원 = 144만원)
- 보수교육비: 1,647백만원
 - 이론교육 비용: 40만원 × 8회/월 × 12개월 × 3개소⁵⁾ = 11,520만원
 - 실기교육 비용: 38만원 × 8회/월 × 12개월 × 3개소 × 14라인⁶⁾ = 153,216만원
 - 연간 수용 가능 교육생 수: 14라인 × 4명 × 8회/월 × 12개월 = 5,376명

[표 9]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증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드론조종 교육증명 (안 제24조)	표준교재 제작	100	-	-	-	-	100	20
	문제 출제	15	15	15	15	15	75	15
	보수교육	-	1,647	1,647	1,647	1,647	6,588	1,318
합 계		115	1,662	1,662	1,662	1,662	6,763	1,353

주: 향후 정책연구용역 및 시험 관련 각종 수당 단가 등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현재 실시 중인 사업과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4)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

5) 교육가능 센터 : 화성(드론자격센터), 시흥(드론교육센터), 김천(드론자격센터)

6) 센터별 실기시험장 라인 수 : 화성 6라인, 시흥 4라인, 김천 4라인

- 향후 추계에서 가정한 기본계획, 드론기술기준, 드론 비행규칙 관련 연구용역비의 단가, 무선설비 시스템 구축 단가, 조종교육 증명 시험 관련 수당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